

인공신장실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손승환 내과

손 승 환

환자유치 호객행위 관련



2008.9.5 MBC 뉴스데스크



2008.9.6 MBC 뉴스투데이

차 례

1. 투석관련 일반 사항
투석현황, 투석과 관련된 사회문제
2. 불법행위관련된 의료법
개설, 환자유치행위, 광고
3. 불법행위 사례
4. 불법 행위로 인한 부작용
5. 불법행위감소를 위한 대안

투석환자현황(혈액,복막) 2005년

- 혈액투석 : 건강보험 28,687
의료급여 12,872
소계 41,559
- 복막투석: 건강보험 9,554
의료급여 3,103
소계 12,657
- 총 계 54,216

의료비와 투석

- 전체 의료비(의료급여포함)

	전 체	투석환자
대상인구	4천만	5만4천명
비 용	28조	8천억

- 의료급여재정

	전 체	투석환자
대상인구	176만(전체3%)	1만6천명
비 용	3조2천억	3천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 전체예산 70%, 전체환자 75%
투석환자 1만3천명 지원

진료비부담구분

-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10%
보험자부담금(공단부담금)90%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자중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지원
- 의료급여 (의료보호) : 전액 국가 부담

진료비부담에따른 환자비

	전체	1차의원(15)
건강보험	46%	32%(8-49)
난치성지원	24%	37%(25-50)
의료급여	30%	31%(18-61)

혈액투석 비용구조

고정비 42%: 건물 관련비용(전기, 수도), 시설투자비용(투석기,진료 장비 포함)등

인건비 23%: 의사 인건비, 퇴직금, 각종 연금 포함

재료비 35%: 투석액등 소모성 재료, 투석액만 포함(기타 약제 미포함)

비용구조와 관련된 문제

- 초기 시설 투자비가 크다
 - 20대 규모 (9 - 13억), 130평 면적 필요
 - 최신 시설 증가 : 정수시설, 재사용처리시설등
 - 환자 요구 증가 : 편의시설의 수준이 높아짐
 - 초기투자회수 기간이 길다 - 경영문제 유발
- 소모성 재료비 비율이 크다.
 - 전량 수입품이며 고가
 - 선택의 다양성이 제한
- **원가 절감의 한계 -**
 인건비절감 , 환자유치, 재료비절감

투석 관련 사회경제적 문제

1. 환자입장 : 합병증및 주3회 통원치료로 인한 경제력 상실. 장기예후와 무관하게 비용절감 욕구
- 2.보험재정측면 : 투석관련 재정절감우선 수가 통제 강화, 엄격한 심사
- 3.의료인측면: 초기투자비회수불안, 개설비용증가,수익구조왜곡

부분별한 과당 경쟁

- 초기투자 회수 불안
- 도시에 밀집한 신장실
- 비영리법인의 공개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 일부 의료인의 과도한 개인 욕심
- 혼잡스러운 불법행위
- 감독기관의 무관심
- 내과의원의 불경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 최근 의료인의 의료인 고용 중복개설, 한양방 이중면허자의 이중진료허가 판례가 있다

환자유치행위 관련 의료법

-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 2003. 6.

- 특정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사례 빈발
- - 이에 대한 사회문제화 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금지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02.3.30 법률제6686호)하여 1년의 유보기간을 거쳐 시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 범위>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교통편의 제공행위 범위>

- -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 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으로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행위별 승인 절차 및 기간>

-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증빙서류 포함)
-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지 않음)
-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은 해당 지역 대중교통수단을 반드시 확인

8. 관할보건소의 답변은 (참조자료 6) 무료식사제공은 의료법 위반이나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때 제공하는 음식은 치료목적의 의료서비스라 하였습니다. 즉 혈액투석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_____ 다 _____ 를 _____

1. 혈액투석환자에게 저혈당이 빠질 경우가 있어 투석환자지원(달노별 유무와 관계없이)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인지?

2. 내원한 전체 혈액투석환자에게 무료 식사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소소의 판단이 맞는지?

3. 의료기관에 외래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혈액투석환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상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끝.

보건복지부장



광고 관련 의료법

-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했다. 뿐만아니라 "최신기종의 투석기 _____의 병상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투석막을 비취해 환우들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며 "최신시설의 정수식은 투석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공심장실에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_____ 오랜 투석생활로 지친 환우들에게 깨끗한 원목으로 된 침대로 편안함을 느끼게 했고, 각 침상당 대의 스타일링 TV가 저체적으로 신장심을 받게 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개인별 사물함 또한 _____ 마음을 끌었고, 편안히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남여 탈의실, 병문수기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공인된 최초 고유량 투석 개시"

맞춤투석 처방 (3.5~4.5시 28 11.21PM

과연 무료, 자선인가?

(어떻게 유지가능한가)

- 진료비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진료비 무료 = 위 둘 다 안받는 것

무료투석의 허구

- 진료비를 무료라함은 본인부담금 뿐아니라 공단부담금(90%)까지도 무료로 해야하는 것
- 본인부담금을 안받는 것은 환자 유치행위이고 이때 청구한 공단부담금도 환수해야 함
- 비영리 복지재단, 의료법인, 개인의원모두에 해당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9-29 06:48

서울행정법원 판결 **자선 비용은 행위자 부담이 원칙 무료 진료 급여청구권수**

의료봉사후 진료비 청구 업무정지 40일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자선 비용은 행위자 부담이 원칙'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성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보림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법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07년도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다.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① 외국 국적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제외한다)
-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자
- ③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④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진료비부담에 따른 환자 구성비

	전체	1차의원
건강보험(7월부터 10% 본인부담)	46%	32%
난치성질환	24%	37%
의료급여	30%	31%

본인부담금 감면의 흑막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유)

- 환자 중 30% 정도만 본인부담금을 낸다.
- 비영리 복지법인 에 대한 세제혜택
- 일반의원의 4분의 1 수준
- 정부, 기타 사회단체, 일반인의 후원금
- 세제혜택 부분만 고려해도 전혀 손해 볼 상대가 아님
- 투석횟수 허위, 진료왜곡으로 보전
- 제약사 결제 미루기와 리베이트 요구

환자유인행위관련 불법

- 타 병원환자에게 수시로 전화걸어 유인
- 타 병원입구에서 전단지 배포나 환자를 뒤쫓아 유인
- 본인은 병원을 옮기지 않고 환자를 빼돌리거나 병원에대하여 비난하는 일
-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환자를 유인
- 교회등 종교단체, 보건소, 정당등과 결탁하여 환자 유인
- 장기기증본부처럼 장기이식에 대한 기대를 주거나 제주도 여행을 통하여 유인

진료비 관련 불법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낸 뒤 본인부담금은 안받는 회원제, 타병원가면 안들려줌
- 본인부담금은 받고 정기적으로 환자에게 다시 돌려줌
- 본인부담금을 안받고도 일정금액을 환자에게 주는 경우
- 타 병원에서 전원시 일정금액을 주는 경우
- 타 병원 환자유치시 보상하는 경우
- 의료보호환자에게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줌

진료비 관련 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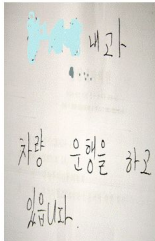
- 환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병원을 돌아다니며 흥정
-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비 지원금액을 나누어 갖는 경우

음식제공관련 행위

- 정기적 환자 모임을 만들어 비용을 제공하거나, 환자들이 모임을 한 뒤 병원에게 비용을 요구
- 환자에게 식사제공을 위해 자체 식당을 운영
- 환자에게뿐만아니라 보호자에게까지 제공
- 투석 당일이 아니어도 음식 제공
- 식사의 내용이 점차 커짐

차량 운행 관련 행위

- 환자에게 차량을 사주고 운영비도 주면서 환자들 자체로 하는 것으로 위장
- 병원차량을 환자에게 운영비주고 운영
- 보건소의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 환자들이 이용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나 복지재단이어서 차량 운행이 합법적이라는 경우
- 비상식적 장거리 운행 : 부천-인천-서울-안양, 강북-성남-분당-영등포-관악구,
- 지방의 경우 2-3시간 거리 운행



진료과정관련 행위

- 투석시간 줄이기와 투석횟수 늘이기
- 투석횟수 허위 청구
- 같은 지역에 신장실 두곳 열고 번갈아가며 거의 매일 투석 (투석시간을 줄임)
- 요양병원이 아니라도 숙소마련하여 환자를 수용하여 투석
- 약물 투여량 속이기 (Epo등)
- 적정 정기검사 생략 (의료보호 정액수가)

개설과 관련 행위

- 의사와 간호사가 결탁하고 투자자 모집
- 환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의사와 투자자 모집
- 환자들이 직접 투자하여 신장실 개설
-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을 만들어 전국에 걸쳐 개설 (장기기증, 새생명, 제천 서울병원등)
- 외국 자본 또는 기계회사에 의한 체인식 개설
- 투석의사가 두 곳 이상 개설

경인일보

www.kynews.com

"신부전증 환자 데려오면 10만원"
"환자장사" 단연... 일부병원 전문분야까지 '쫓긴'



사회·봉사단체가 '환자 장사'?

특정병만 다룬 병원 신부전증 치료자 배제...
성동여 지원, 열매나무... 리베이트등 수사

열매투석시설 감사장의원 칭찬 '자자'
관내 신장장애인 경제적 부담 덜어 줘



경인일보
Since 1960 창간 48주년

영세사업업자 특별보증
1주년 지원 실시!! 대/보/호

뉴스 경인일보 동명상뉴스 포토존 한자신문 기자블로그 부동산 사주

로그인 | 회원가입 | 비밀번호 찾기 | 9:00 ~ 11:20

▷ 홈 ▷ 뉴스 ▷ 인천 ▷ 사회

▷ 인천으로의 인천 ▷ 해외보내기 ▷ 오마이뉴스 ▷ 포털트렌드 ▷ 기가 ▷ 웹문서검색

역대 진료비 허위청구 복지재단 이사장 '실형'

2008년 08월 26일 (화) 김명호53boq79@kyeongin.com

역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인천 소재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경만)는 25일 역대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지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인천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 박모(61)씨에 대한 합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천200차례 넘게 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중대하게 위장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면서 재단법인의 운영을 전횡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모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박씨는 재단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 병원 계좌로 1억5천9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명호의 다른기사 보기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 의료 ▷ 무료

大田日報
당일보 당직팀 입문

정치 사회/교육 경제/과학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과사람 문화 독자마당

종합 주간경제색션 부동산 기업/취업 IT/과학 국제경제 자동차 기획

대전일보 > 사회/교육 > 기획

연간 2008-09-23
① 확대 ② 축소 ③ 인쇄 ④ 매일 2008-09-24 7면기사

신장투석 환자 불법 유인 또 활개 - (上) 실태

병·의원, 채무변제 등 유혹

대전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장투석 환자 불법 유인행위가 검찰의 처벌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브로커 고용, 본인 부담금 면제, 이른바 '월정료'와 불리는 금품 제공, 식사와 교통편의 제공에서 채무변제나 의료비 대납 등을 담보로 한 유인행위, 간병인을 통한 유인행위 등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행위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대책 등을 3회에 거쳐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기타 사례

- **평택 *내과** : 지역 환자단체대표를 사무장으로 영입 공동개원 - 서울, 수원에 추가 개설 - 환자대표에게 사기당하고 결별
- **강북 *내과** : 평택의 원장과 공동 개원, 환자 대표가 환자를 빼내어 이동 - 돈암동개설 - 현재 다른 자본가에게 매각
- **연예인장애팀 협회** : 위 돈암동의 환자들이 독립하여 개설, 강서에 추가 개설
- **성남 *의원** : 지역환자단체와 연결됨, 관리의사를 신장내과 전문의로 둬.

- **부천*의원** : 90년대 임상병리기사 의사와 공동개원 - 독립 - 의료법인 2개소 신장실 운영 (MBC 내용)
- **구로 * 의원**: 원장과 주인이 다름. 유치행위는 사무장이 주도

'노인 빼가기' 막는 요양기관

2009년 11월 14일 (수) 03:33 서울신문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노인 빼가기' 등의 불법 편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노인요양기관의 불법 편법 행위는 모두 921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과잉경쟁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88%(826건)를 차지했다.

노인요양기관 불법·편법 행위 (2008년 7~12월)

기타 303건 (33%)	노인 빼가기 159건 (17%)	총 921건
보험 과다 청구 663건 (72%)	노인 유인·유인방위 667건 (73%)	

[서울신문]경기 북부에 있는 A요양소의 요양보호사 김모(45·여)씨는 요양소에 취업한 뒤 1년이 지나자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3명을 모아 인근의 B요양소에 입소시켰다. 자신도 웃돈을 받고 B요양소에 재취업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다른 요양소로 옮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는 곧 '돈'이었다.

실태점검

노인요양병원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08년 12월 5일 KBS 추적 60분

■ <밀착취재> 현대판 고리장, 노인요양병원에 병치된 사람들!

노인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재보자는 응급상황을 대처 할 의사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보겠다고 증언했다. 환자에게 수면제를 찍어 잠을 깨우고 손발을 묶어두는 일은 더욱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재직자는 재보를 통해 알게 된 요양병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요양병원에 감찰! 1박2일 동안 노인요양병원의 실상을 밀착 취재했다. 그 속에서 기분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환자들을 만나본다.

■ 검은 거래에 노출된 노인요양병원의 일상은?

정부가 요양병원 설립을 지원하면서부터 무우족은 난립해 생겨난 노인요양병원은 지금 과도한 공급 초과상태이다. 인세가 떠오르는 산업, 평균살을 넣는 거위인 인식되어 투약 문제까지 불려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자를 사고파는 브로커까지 등장! 국가에 부정영구를 해서 돈을 따먹는 자의 전발도 늘어나고 있다. 생존경쟁에 몰입한 병원의 불법적인 행태가 더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이라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추격 60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본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한국. 2001년 도입된 제도 32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8년 사이 무려 6800개로 늘어난 실정! 수익을 내기위한 병원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치료가 시급한 노인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추적 60분> 노인요양병원 2시간 감찰 취재! 요양병원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 실태를 추적합니다.

- 환자들의 무리한 진료외적 요구증가
 - 의료인의 위상 훼손, 의료기관 이미지 실추
 - 환자들의 단체행동 증가
- 적정수가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
 - 본인부담금 안받고도 병원운영이 된다는 인식 제공
- 재투자에 대한 의욕상실과 의료시장 왜곡 및 병원경영악화
 - 간호사 인건비 상승요인, 환자수 감소, 진료외비용 발생, 부적절한 수가, 폐업
- 신진 의사 진출 장애
 - 전공과정 기피, 학문발전저해, 외과등 사례

- 훈련되지 않은 의사 고용 및 과다한 환자로 인하여 진료를 간호사에게 의존 - 인건비 상승 요인
- 무자격개설자, 투자자에 의해 개설된 경우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가 필연적
- 투석기 업체에 의한 직접 투자 신장실이 많아져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었을 때 후발 투석기 업체는 시장확보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아 시장 교란이 온다.

- ###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투자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폐쇄(사무장 병원)
 - 인공신장실 운영인정기준안 마련
 - 적정시설, 인력유지
 - 투석질관리 주도
 - 투석전문의료도 실질적 운용
 - 투석전문제도 강화 - 자체정화, 인식전환
 - 투석진료비 국가부담 고려
 - 신장재단의 활성화 -
 - 대국민교육, 정책대안마련, 환자진료비 지원등
 -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 ###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 1) 수평적, 상호 보완 협력 시스템
 - 2) 의료 전달 체계 활성화
 - 3) 응급, 중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내 협조
 - 4)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 경험 확대
 - 5)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공동 대처
 - 6)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동 연구
 - 7) 개인 의원의 학회 활동 기회 제공

- ### 정 리
- 부천-의정부-수원-대전
 - 장기:인천-충청로-부산-대구-제주
 - 새생명:종로-의정부-부산-수원
 - 평택-수원-상계-돈암
 - 은세계: 인천-대구-강서-방배-양재
 - 부천, 인천지역
 - 대전, 부산, 수원지역

- 자선을 가장한 영리행위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폐업 -- 후배들의 진료결정에 영향 - 신장분야 지원감소 -대학병원활동위축 -신장분야전체 침체 (의료진, 환자, 의료산업에 악영향) - 경쟁 치열 - 악순환
- 필요로 하지만 여건이 나빠져 고사되는 의학분야가 있다.
- 제도적 개선노력과 **교육현장**에서의 인식전환및 현장에서 **개인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